

등록번호	법무감사실-2662
등록일자	2026. 3. 26.
결재일자	2026. 3. 26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조사담당	법무감사실장			
정기영	조현정	전결 2026. 3. 26. 최형수			
협 조					

- 국민의 권익보호 및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-

2025년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

인천광역시중구
법무감사실



要 旨

2025년 「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」 운영보고

□ 큰 거

- 「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1조

□ 위원회 개요

- 구성인원 : 3명(비상근, 민간위원)
- 위원임기 : 2024. 4. 3. ~ 2028. 4. 2.[4년, 연임불가]
- 임 무
 -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 -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, 조정 등 처리
 -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, 처리
 -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, 처리

□ 위원회 운영

- 신청방법 :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
- 신청대상
 - 중구 및 소속기관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
 -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
- 처리절차 : 상담 및 신청 → 민원사항 조사 → 조사결과 심의·의결 → 처리결정 통지 → 수용여부결정(처리부서)
- 처리기한 : 60일(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 불가 시 30일 연장가능)

□ 운영성과

- 연 중 :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(접수건수 없음)

- 구민의 권익보호 및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-

2025년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

「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1조에 따라 우리 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고자 함

I | 관련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7조
- 「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1조

II | 위원회 개요

□ 위원회 구성

- 위원명단 : 3명 (비상근, 민간위원) *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

연 번	성 명	직 업	소 속
1	안귀옥	변호사	○ 안귀옥법률사무소 대표
2	최선애	변호사	○ 법무법인 서앤율 대표변호사
3	김지민	변호사	○ 법률사무소 KYL 수석변호사

- 임 기 : 2024. 4. 3. ~ 2028. 4. 2. [4년, 연임불가]

○ 자격요건

-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4급(상당)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건축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□ 위원회 직무

-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-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·조정 등 처리
-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·처리
-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·처리

III

위원회 운영

□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

- 접수방법 : 온라인, 방문, 우편, Fax
- 신청대상
 - 중구 및 소속기관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(사실행위 및 부작위)
 -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
- 제외대상
 -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 사항
 - 행정심판·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판청구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
 - 수사·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
 -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처리기한: 60일 이내(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 불가 시 30일 연장 가능)

○ 처리절차

민원접수	• 온라인, 방문, 우편, FAX / 서면신청
	▼
사실조사	담당위원지정 → 관련부서에 조사 통보 → 서면·면담·현장조사 실시
	▼
민원처리	• 시정권고, 의견표명, 제도개선, 조정, 합의, 기각 • 각하 또는 이송
	▼
결정통지	• 민원인 및 해당 부서에 결과 및 의견 통지
	▼
처리결과 통보	• 의견을 받은 부서는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

○ 의견 통지

- (시정권고)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한 경우
- (의견표명)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(합의해결)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한 경우
- (조정해결) 다수인과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할 경우(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)
- (기 각)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(기 타) 각하, 이송 등

IV

운영성과

□ 2025. 연 중 :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

○ 접수건수 : 없음